

청주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5486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재판경과

청주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54860 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73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박항규

변론종결 2022. 5. 19.

판결선고 2022. 6. 9.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73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0. 3. 3. 접수 제209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 5. 6. 접수 제45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9행과 10행 사이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오히려 위 차용증에는 2010. 3. 2. 발급된 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증 작성 시점과 피고의 C에 대한 금원 송금 시점 및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시점이 모두 인접해 있어 위 차용증이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위 제2 근저당권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제1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 4,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대여금 채권과 무관하게 재산 은닉 목적으로 설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위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C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제2 근저당권은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4면 16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의 요청에 의하여 2016. 9. 7. 기존 차용금 1억 4,000만 원의 변제기가 2019. 9. 30.로 연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변제기 연장 요청은 시효 완성 전 채무 승인으로서 그로 인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위 변제기 연장 요청으로 실제 변제기가 연장된 이상 연장된 변제기인 2019. 9. 30.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위 연장된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0.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권, 판사 조희정, 판사 성찬용

별지